

『구미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개별법 개정으로 인한 위임사무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의한 위임사무 신설
 - 읍면동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출입국관리법」 제88조

5. 검토의견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 출입국관리법이 2010년 5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의거 출입국사실증명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·면·동장에게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기 위해 자체 내부위임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 없음